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30
----------	-------

발의연월일 : 2026. 2. 27.

발 의 자 : 김종민 · 이수진 · 복기왕
김영배 · 문대림 · 황 희
민형배 · 박홍근 · 위성곤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화재의 특성상 소방관이나 기존 소화설비로는 화재진압이 어렵고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임.

따라서 자동화된 소화장비·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함.

이에 현행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 인

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상방향 자동 직수장치, 하부 자동 스프링클러, 천장형 자동 침수조일체식 소화포, 기타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방향 자동 직수장치, 하부 자동 스프링클러, 천장형 자동 침수조일체식 소화포, 기타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화설비 등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 ⑫ (생략)</p> <p><u><신 설></u></p>	<p>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 ⑫ (현행과 같음)</p> <p><u>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방향 자동 직수장치, 하부 자동 스프링클러, 천장형 자동 침수조일체식 소화포, 기타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u></p>